

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9 ~ 3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9. 02. 13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- 여름 피서철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수승대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,
-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조항을 간명화 함.(안 제1조)

- 수승대관광지(이하 “관광지”라 한다) → 수승대관광지
-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(이하 “관람료등”이라 한다) →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

나. 목적 조항에서 삭제한 “관광지” 및 “관람료등”의 약칭을 사용함.

- 관광지 → 수승대관광지(이하 “관광지”라 한다) (안 제2조)
- 관람료등 →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(이하 “관람료등”이라 한다) (안 제8조제1항)

다. 관람료의 징수시기와 관련한 용어의 뜻을 신설함.

- 성수기 :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(안 제4조제6호 신설)
- 비수기 :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(안 제4조제7호 신설)

라. 관람료는 성수기에만 징수하고 비수기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함.

- 관람료는 관리사무소(직원이 직접 취급하는)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되, 제4조제6호에 따른 성수기에만 징수하고 비수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.(안 제6조제1항)

마. 관계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와 인용하는 상위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.(안 제8조제1항제6호, 제11조제2항)

- 장애인수첩 → 장애인등록증(「장애인복지법」)
- 「지방재정법」 →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바. 「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.

- ~의 규정에 의하여(의한) → ~에 따라(른)
- ~의(에) 정하는 → ~로(에서) 정하는
- ~에 의한다 → ~에 따른다
- ~의 정의는 → ~의 뜻은, ~(이)라 함은 → ~(이)란
- 아니한다 → 않는다
- 그러하지 아니한다 → 그렇지 않다
- 기타 → 그 밖에(의), 이외 → 외
- 관광지내 → 관광지 안
- ~할 때에는 → ~하면
- 붙일 → 부칠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
-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2) 입법예고(2009. 1. 15. ~ 2009. 2. 5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수승대관광지(이하 “관광지”라 한다)”를 “수승대관광지”로, “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(이하 “관람료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관람료 및 시설이용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본 관광지”를 “수승대관광지(이하 “관광지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조례의”를 “조례로”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(이)라 함은”을 각각 “(이)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성수기”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7. “비수기”란 제6호의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관람료는 관리사무소(직원이 직접 취급하는)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되, 제4조제6호에 따른 성수기에만 징수하고 비수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.

제6조제2항 본문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“의한다”를 각각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람료등을”을 “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(이하 “관람료등”이라 한다)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6호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”으로,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광지내”를 각각 “관광지 안”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”을 “관람료등은”으로,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9조제4호 중 “관광지내”를 “관광지 안”으로, “이외”를 “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관람료”를 “관람료등의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인정할 때에는”을 “인정하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「지방재정법」에”를 “「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”로, “붙일”을 “부칠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조례에”를 “조례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”을 “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”으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수승대관광지</u> (이하 "관광지"라 한다)의 보호관리와 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</u> (이하 "관람료등"이라 한다)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수승대관광지</u>----- ----- 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제1항에 따른 <u>관람료 및 시설이용료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위치) 본 관광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769번지 일대(235,479m²)로 한다.</p>	<p>제2조(위치) <u>수승대관광지</u>(이하 “<u>관광지</u>”라 한다)----- -----.</p>
<p>제3조(적용범위) 관광지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<u>조례</u>의 정하는 바에 <u>의한다</u>.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<u>조례</u>로 ----- <u>따른다</u>.</p>
<p>제4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<u>어린이</u>”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 2. “<u>청소년</u>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. 3. “<u>군인</u>”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(전투·의무경찰을 포함)을 말한다. 4. “<u>노인</u>”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 5. “<u>단체</u>”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. 	<p>제4조(정의) ----- 뜻은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<u>란</u> ----- -----. 2. -----<u>이란</u> ----- -----. 3. -----<u>이란</u> ----- -----. 4. -----<u>이란</u> ----- -----. 5. -----<u>란</u>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제6조(관람료징수 등) ① <u>관람료는 관리사무소(직원이 직접 취급하는)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.</u></p> <p>②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<u>아니한다</u>. 다만,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그러하지 아니한다</u>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관람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</u></p> <p>제7조(시설이용료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.</u></p> <p>③ <u>야영장 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</u></p> <p>④ <u>썰매장 이용권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.</u></p> <p>⑤ <u>유선(보트)장 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.</u></p> <p>⑥ <u>시설이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관람료의 예에 의한다.</u></p>	<p>6. “성수기”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</p> <p>7. “비수기”란 제6호의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.</p> <p>제6조(관람료징수 등) ① <u>관람료는 관리사무소(직원이 직접 취급하는)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되, 제4조제6호에 따른 성수기에만 징수하고 비수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.</u></p> <p>② ----- --- <u>않는다.</u> ----- ----- <u>그렇지 않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따른다.</u></p> <p>제7조(시설이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따른다.</u></p> <p>③ ----- ---- <u>따른다.</u></p> <p>④ ----- ---- <u>따른다.</u></p> <p>⑤ ----- ---- <u>따른다.</u></p> <p>⑥ ----- ----- <u>따른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관람료등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<u>관람료등을 징수하지 않는다.</u>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국가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, 「장애인복지법」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 소지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</u></p> <p>7. <u>기타</u>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 <u>관광지내에 거주하는 자와 관광지내에 거주하는 자를 방문하는 자 및 낚시터 이용자에 대하여는</u> <u>관람료를 면제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8조(관람료등의 면제) ① ----- ----- <u>관람료 및 시설이용료(이하 “관람료등”이라 한다)를 -----.</u>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---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-----</p> <p>7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② <u>관광지 안</u>----- <u>관광지 안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입장거절 및 퇴장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,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미 납부한 <u>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u> 다만,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<u>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관광지내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수영, 불법주차,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자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<u>기타</u>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</p>	<p>제9조(입장거절 및 퇴장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람료등은 -----</u> ----- <u>않는다.</u>----- ----- ---- <u>그렇지 않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관광지 안</u>----- ----- <u>외</u>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</p>

